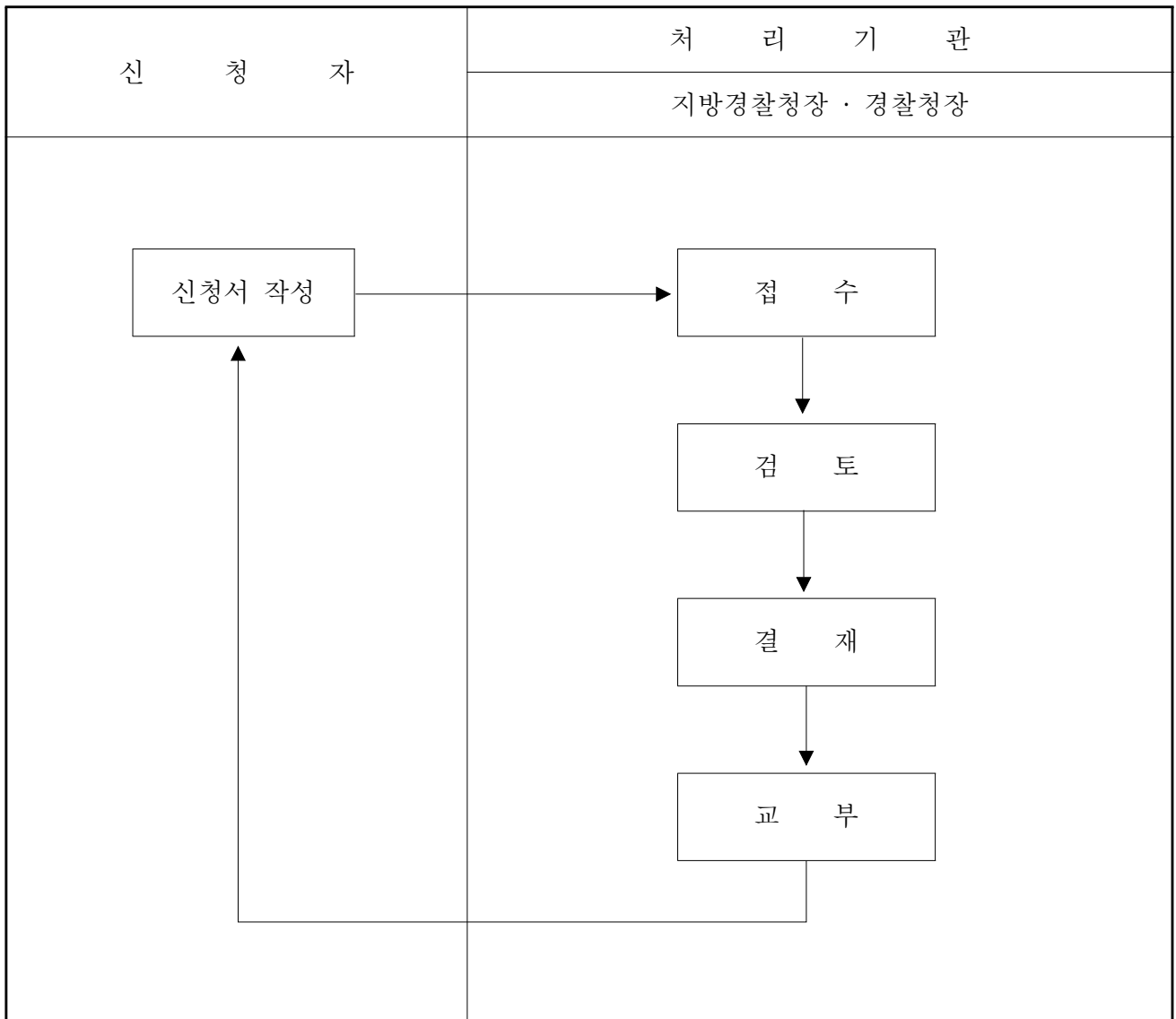


사행행위영업(사행기구 제조·판매업)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				처리기간
				5일
신청인	①성 명		②주민등록번호	
	③주 소		④전 화 번 호	
	⑤업 소 명		⑥영업허가번호	
	⑦영업소소재지		⑧영업의 종류	
⑨승 계 발 생 사 유				
신 고 사 항				
구 분		승 계 전	승 계 후	
⑩영 업 자 성 명 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)				
⑪영 업 소 명 칭				
<p>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 찰 청 장 귀하 지방경찰청장</p>				
구비서류 1.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(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 증명서 각 1통,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1통 및 상속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,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)				수수료
				뒷면참조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뒷면)



수 수 료(영 제14조 관련)

구 분	영업의 허가	변경허가	승계신고
복표발행업 및 현상업	10만원	5만원	5만원
기타사행행위업	5만원	2만5천원	2만5천원
사행기구제조업	10만원	5만원	5만원
사행기구판매업	5만원	2만5천원	2만5천원